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예시 01 시간급인 경우

: 1시간에 8,000원의 시간급을 받는 경우

$$\begin{array}{r} \text{시간급} \\ 8,000\text{원} \end{array} < \text{최저임금법 위반} \quad 8,350\text{원}$$

설명_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예시 02 일급인 경우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4,000원을 받는 경우

$$\begin{array}{r} 64,000\text{원} \\ \div 8\text{시간} \\ \hline 8,000\text{원} \end{array} < \text{최저임금법 위반} \quad 8,350\text{원}$$

설명_ 64,000÷8시간=8,000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예시 03 주급인 경우

: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192,000원

$$\begin{array}{r} 192,000\text{원} \\ \div 24\text{시간} \\ \hline 8,000\text{원} \end{array} < \text{최저임금법 위반} \quad 8,350\text{원}$$

설명_ 192,000원÷24시간(주5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8,000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예시 04 월급인 경우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672,000원을 받는 경우

$$\begin{array}{r} 1,672,000\text{원} \\ \div 209\text{시간} \\ \hline 8,000\text{원} \end{array} < \text{최저임금법 위반} \quad 8,350\text{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

: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808,000원을 받는 경우

$$\begin{array}{r} 1,808,000\text{원} \\ \div 226\text{시간} \\ \hline 8,000\text{원} \end{array} < \text{최저임금법 위반} \quad 8,350\text{원}$$

※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

주휴수당은 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서울남부지청	02)2639-2100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서울북부지청	02)950-9880
서울동부지청	02)403-0009	서울관악지청	02)3281-0009
서울서부지청	02)713-00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	안산지청	031)412-1992
인천북부지청	032)540-7910	평택지청	031)646-1114
부천시청	032)714-8700	강원지청	033)269-3551
의정부지청	031)877-0009	강릉지청	033)650-2500
고양지청	031)931-2800	원주지청	033)769-0800
경기지청	031)259-0204	태백지청	033)552-0009
성남지청	031)788-1505	영월출장소	033)374-0009
안양지청	031)463-73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울산지청	052)272-0009
부산동부지청	051)559-6688	양산지청	055)387-0009
부산북부지청	051)309-1500	진주지청	055)752-0009
창원지청	055)239-6500	통영지청	055)645-000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00	구미지청	054)450-3500
대구서부지청	053)605-9000	영주지청	054)639-1111
포항지청	054)271-6700	안동지청	054)851-8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2)975-6200 (064-728-6100)	군산지청	063)452-0009
전주지청	063)240-3400	목포지청	061)280-0100
익산지청	063)839-0008	여수지청	061)650-010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90	충주지청	043)840-4000
청주지청	043)299-1114	보령지청	041)931-6640
천안지청	041)560-2800		

www.minimumwage.go.kr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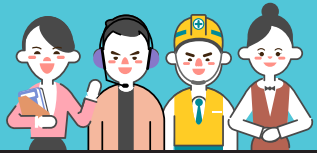
월 환산액 1,745,15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9.1.1.~2019.12.31. 적용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최저임금

&



Q
A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A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A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③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A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산입)
-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1,745,150원)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Q
A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9년 2월 급여 1,975,50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50,000원
식대	50,000원
시간외수당	105,0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계	1,975,50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중	0원**
임금 계	1,650,000원

* 상여금 125,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 1,745,150원의 25% 초과금액

** 식대·교통비 100,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 1,745,150원의 7%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650,000원 ÷ 209시간 ≒ 7,895원 < 8,350원

∴ **최저임금 위반**

